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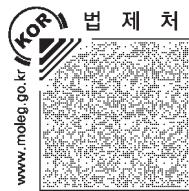


행정심판 재결례

| 중앙행정심판위원회

#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
글.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



사 건 2018-19429  
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
청 구 인 김○○

피 청 구 인 ○○지방고용노동청○○지청장

심판청구일 2018. 10. 8.

## 주문

피청구인이 2018. 9. 21.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## 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.



## 이유

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2018. 8. 7.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2018. 9. 21.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### 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를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, 제3채무자진술서에 따르면, 이 사건 회사는 현재 자본이 거의 없는 점,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### 3. 피청구인 주장

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았고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□□□(이하 ‘이 사건 사업주’라 한다)가 4대보험상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주가 명확한 사업 계속 의사가 있는 점, 이 사건 회사에 단순히 환가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케팅 업종의 특성상 별도의 자산 없이도 주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·타당하다.

## 4. 관계법령

임금채권보장법 제1조, 제3조, 제7조, 제27조  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24조

## 5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### 가. 관계법령의 내용

- 1)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·제2항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「민법」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,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 하여 지급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,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③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, ④ 그 사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, 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, ⑥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⑦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, ⑧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⑨ 사업주(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)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(도산등사실인정)할 수 있는데, 이에 따른



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2) 한편,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.

#### 나. 판단

1)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, 사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.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.

2)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사업주가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, 실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, ① 피청구인이 2018. 10. 18. 조회한 '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'상 청구인이 퇴직한 후 2018. 10. 18.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, 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19. 4. 2.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

부확인서상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2,816,320원이 미납된 것이 확인되고, 제3채무자진술서상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○○은행과 주식회사 △△은행으로부터 가진 채권액은 총 201,775원에 불과하며,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◇◇◇이 2018. 9. 10. 작성한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‘도산등사실인정(사업주) 진술조서’에서 이 사건 사업주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, 이 사건 사업주의 진술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, 실적 전망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, ③ 이 사건 사업주가 2017. 5. 30. 이 사건 회사의 임대인 김○○에게 보낸 내용증명상 이 사건 회사는 면적이 135.81㎡인 사업장에 소재지를 두었다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고, 이후 이 사건 사업주가 2018. 3. 30. 체결한 부동산전대계약서상 전대면적이 3.3㎡인바, 이는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장 소재지의 면적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사가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계속 행하여짐으로써 영업상 이익이 발생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.

- 3)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.

## 6. 결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